

# 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 사업 추가 공고[3차]

신체적 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서울 지역 개별휴게시설에 대하여 추가 신청을 받으니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0일

## I 사업목적

- 신체적 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작업성질환 예방에 기여

## II 사업개요

- 추가 공고대상 : 서울 지역 개별휴게시설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 (설치 소재지 기준)
  - 신청가능 일선기관별 잔여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가능 일선기관	관할지역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추가 공모기간 : '23. 4. 20. (목) 09:00 ~ '23. 5. 4. (목) 18:00

### ※ V. 세부추진절차 참조

- 지원품목 : 휴게실 및 냉·난방기 등 휴게시설 품목
  - 보조지원 대상 휴게실은 투자완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 전 지자체에 휴게시설 설치(컨테이너 등)와 관련한 인허가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사회적 현안, 산업재해발생 현황, 고용노동부고시·공단 규칙개정 등에 따라 지원설비 및 지원기준 변동 가능

### III 신청대상

#### □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sup>\*</sup> 규모 이하의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상시근로자수 판단】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 □ 참여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지원제외 대상】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⑤ 건설업(건설업 본사를 통한 건설현장 지원불가, 단 건설업 본사에 설치하는 경우는 인정)
-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 IV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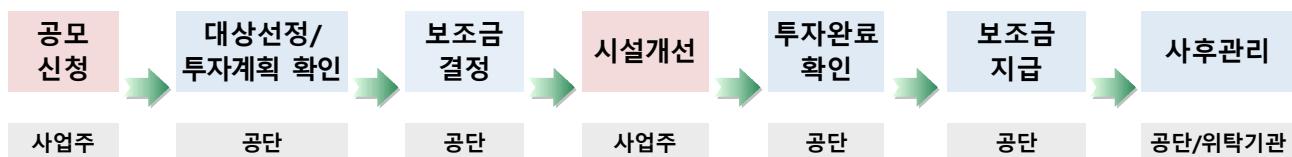
### □ 지원금액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 (지원비율) 공단판단금액 기준 대상별 지원비율 적용

지원비율	구 分	비 고
공단 판단금액의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시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li><li>▶ 지원대상 사업장 중 7개 취약직종*이 종사하는 사업장<ul style="list-style-type: none"><li>* ①전화상담원, ②텔레마케터, ③돌봄서비스 종사원,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건물경비원, ⑦아파트경비원</li></ul></li><li>▶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에 따른 고열작업, 한랭작업, 다습작업이 있는 사업장</li><li>▶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li><li>*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4호에 해당하는 작업</li></ul>	냉난방시설 소파(의자), 테이블(탁자), 조명등 휴게 비품·설비만 신청할 경우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공단 판단금액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기 조건 외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li><li>▶ 상기 조건 외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li></ul>	

### □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 세부사항 별첨2 참조

## V 세부 추진절차



### ① (공모신청)

○ (신청기한) '23. 4. 20. (목) 09:00 ~ '23. 5. 4. (목) 18:00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 공단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사업주)

※ 우편의 경우 신청기한 내 소인일(우편 접수일자) 인정

- (문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1644-8845) 또는 일선기관 연락처

일선기관	연락처	관할지역(서울특별시)
서울광역본부	02-6711-2826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지사	02-2086-8024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서울남부지사	02-6924-8734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제출서류) ※ 공단 누리집(kosha.or.kr) 게시(사업소개→재정지원→건강일터 조성지원→공지사항)

제출 서류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②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④ 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⑤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반드시 사업주의 자필 서명 후 제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⑧ 상품설명서(카달로그 등) 또는 외관도면 등[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가격근거서류 포함)]
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⑩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⑪ 지원품목 설치대상 장소에 대한 사진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⑫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점수부여 증빙서류(해당할 경우만 제출) - (고열작업)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사본 - (한랭·다습작업) 해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공정설명서 등) -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야간특수검진 결과 사본 - ①노사문화우수기업 ②강소기업 ③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④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⑤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⑥일자리 유통기업 ⑦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⑧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⑨산학협력 우수기업 ⑩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 - KOSHA-MS 인증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b>* 신청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점수가 부여됨</b>

주) 사업주가 원할 경우 공사원가계산서(제작원가계산서)를 자금지원 신청 시 제출 가능

- ② (선정) 공모기간 종료 후 안전보건공단은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별첨3)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  
- 일선기관별 심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  
-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제출서류(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 및 자금결정 취소
- ③ (투자계획 확인) 선정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또는 서면확인 등을 통해 투자 계획 확인(공단)  
- 설치 예정장소, 설치 가능여부 등 현장확인을 통하여 투자계획의 적정성 검토  
- 보조지원신청 대상 휴게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별첨1)를 충족할 수 있는 투자계획 제출
- ④ (보조금 결정) 보조금 결정대상자 및 보조금액 결정(공단)  
- 사업장별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보조금 대상자와 보조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지원 가능 금액을 일선기관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 공사(제작)품의 경우 견적서(상세내역서 포함)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결정하나 사업장에서는 보조금 지급(투자완료) 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제작) 원가(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제출[공사(제작)품 보조지금 산정기준(별첨4) 참조]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보조금 결정 및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장에서 원활 경우 보조금 신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제작)원가 계산서' 제출 가능하며 별첨4에 따라 보조금 지원가능금액 결정

- 보조금 결정 전 계약 또는 설비투자 불가함(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

#### ⑤ (시설개선)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공사(제작) 또는 물품 구매(사업주)

-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시설개선 후 투자완료확인 요청

\* 단, 휴게시설의 경우 7월 이후 결정된 사업장은 금년 내 시설개선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함

- 시설 설치장소, 공급업체, 모델, 수량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함

#### ⑥ (투자완료 확인)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사업주)

##### 구 분

①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②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

③ 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④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⑤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⑥ 지급보증보험 증권

⑦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⑧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⑨ 휴게시설 투자완료 점검 확인서

주) 자금신청 시 공사(제작)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결정받은 경우 ④ 생략

※ 제출서류 중 원가검토 보고서,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급보증보험 증권>

- ▶ 보험 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4년(사후관리기간3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예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3.10.13.(지급보증기간: 4년)  
보험기간: '23.9.30. ~ '27.9.29.
- ▶ 피보험자는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로 함
- ▶ 지급보증보험 가입 문의처: 관할 지역 SGI서울보증보험

- 공단은 사업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 및 적정여부 확인
  - 공사(제작)품의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제작)원가(검토) 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공사(제작)품 보조지금 산정기준(별첨4) 참조]
  - 설비 설치 장소, 설비 모델·수량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보완 또는 부적정으로 처리될 수 있음
  - 보조지원 대상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휴게시설 투자 완료 점검 확인서(별첨5) 제출]
  - 제출한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사후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후 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업취소가 될 수 있음
- ⑦ (보조금 지급) 투자완료확인 이후 1~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공단)
- ⑧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위하여 투자 완료 다음연도부터 사후관리 실시(3년)

## VI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자부담비용 대납 등)이 발견될 경우, 신청사업장의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이 발생할 수 있음

###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보조지원 부정수급 금지】

- ▶ 건강일터조성지원 보조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물품 판매 또는 공급업체(공사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는 금지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과 추가적인 금액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보조지원 결정 취소 시 최대 5년간 참여 제한 조치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보조지원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VII 기타사항

- 건강일터 조성지원 재정지원사업은 공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당해연도 공단 보조사업(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안전투자혁신사업,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사업 등) 결정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대상에서 제외  
※ 단, 타사업 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청 가능

## VIII 문의처

- 건강일터 조성사업 대표번호 1644-8845 또는 일선기관 연락처

일선기관	연락처	관할지역(서울특별시)
서울광역본부	02-6711-2826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지사	02-2086-8024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서울남부지사	02-6924-8734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별첨 1.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2.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 보조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3.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4. 공사(제작)품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
5. 휴게시설 투자완료 점검 확인서

## 별첨1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1. 크기

-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 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1)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 3. 온도

적정한 온도( $18^{\circ}\text{C}$  ~  $28^{\circ}\text{C}$ )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5. 조명

적정한 밝기(100勒克斯 ~ 200勒克斯)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 10. 휴게시설의 청소 ·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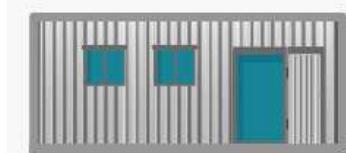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 별첨2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 보조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 ① 휴게시설

#### ① 신규 설치



[예시]

- (최대지원한도) : 보조금 지원 한도 내
- (수량) 제한없음(단,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
- (지원조건) 사업장 건축물 내부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충족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 □ 보조지원 기준

- 견적서(상세내역포함)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 후,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검토)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제작)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

- 공사종류.금액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업체만 시공 가능(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
- 화장실, 샤워실, 수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음
- 건축법,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인허가 등)은 신청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

※ 관련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 환수

####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

- ①견적서(상세내역서 포함), ②도면,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④시공관련 면허 사본(공사금 액에 따라 해당 시)

## ② 개선(리모델링)



[예시 사진]

- (최대지원한도) : 보조금 지원 한도 내
- (수량) 제한없음(단,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
- (지원조건) 사업장 건축물 내부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충족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 □ 보조지원 기준

- 견적서(상세내역포함)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 후,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검토)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제작)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
- 공사종류.금액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업체만 시공 가능(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
- 화장실, 샤워실, 수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음
- 건축법,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인허가 등)은 신청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  
※ 관련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 환수

###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

- ①견적서(상세내역서 포함), ②도면,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④시공관련 면허 사본(공사금 액에 따라 해당 시)

### ③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



[예시]

- (최대지원한도) : 100만원/ $1\text{m}^2$  (바닥면적 기준)
- (수량) 제한없음(단,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
- (지원조건) 사업장 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총족**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총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 □ 보조지원 기준

-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물품(모델)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가격결정 근거자료)로 함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이 없을 경우 견적서(상세내역포함)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 후,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제작)원가(검토)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제작)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
- 별도의 배송.설치비가 소요되는 경우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명기된 금액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가능(보조금 결정 시 반영 후 완료 시 확인)
  - 화장실, 샤워실, 수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음
  - 건축법,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인허가 등)은 신청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
- ※ 관련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 환수

####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

- ①견적서, ②상품상세정보(카탈로그, 제품상세설명서 등),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 ② 휴게시설 비품 · 설비

### ①-1 냉.난방기(벽걸이 및 스탠드형)



[예시]

- (최대지원한도) : 200만원/1EA
- (수량) 휴게실 당 1대로 제한
- (지원조건) 적정온도(18~28°C)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이동식 제외)
  - ※ 온·습도 확인이 불가한 제품일 경우 온·습도계 개별 설치
  -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 □ 보조지원 기준

-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물품(모델)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가격결정 근거자료)로 함
  - \* 실내기, 실외기 및 배송·설치비용 포함 가격(기본시공 외 추가시공 비용은 제외)

####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

- ①견적서, ②상품상세정보(카탈로그, 제품상세설명서 등),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등 제출

### ①-2 냉.난방기(천장형)



[예시 사진]

- (최대지원한도) : 보조금 지원 한도 내
- (수량) 휴게실 당 1식\*으로 제한
  - \* 실내기는 휴게실 크기에 따른 적정수량, 실외기는 1대로 제한
- (지원조건) 적정온도(18~28°C)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이동식 제외)
  - ※ 온·습도 확인이 불가한 제품일 경우 온·습도계 개별 설치
  -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 □ 보조지원 기준

- 천장형에어컨의 경우 콘트롤러 설치, 공조공사 등 현장 조건에 따른 설치조건이 달라 표준화된 가격산정이 어려우므로, 견적서(상세내역포함)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 후,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검토)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제작)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

####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

- ①견적서(상세내역서 포함), ②도면,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등 제출

## ② 쇼파(의자) [근로자 휴게용]



[예시]

- (최대지원한도) : 50만원/1인용
- (수량) 휴게실 면적과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 (배치도 확인)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 포함한 동시 사용인원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 □ 보조지원 기준

-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물품(모델)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가격결정 근거자료)로 함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지원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휴게실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여야 함

###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

- ①견적서, ②상품상세정보(카탈로그, 제품상세설명서 등),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④도급관계 증빙서류(해당할 경우) 등 제출

## ③ 테이블 [근로자 휴게용]



[예시]

- (최대지원한도) : 100만원/1EA
- (수량) 휴게실 면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배치도 확인)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 □ 보조지원 기준

-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물품(모델)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가격결정 근거자료)로 함

###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

- ①견적서, ②상품상세정보(카탈로그, 제품상세설명서 등),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등 제출

#### ④ 조명시설



[예시]

- **(최대지원한도)** : 보조금 지원 한도 내
- **(수량)** 제한없음(단,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
- **(지원조건)** 휴게실 내 적정 조도(100~200lux)를 충족하는 조명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 □ 보조지원 기준

- 견적서(상세내역포함)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 후,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검토)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제작)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

####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

- ①견적서(상세내역서 포함), ②도면,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④공사원가계산서 등 제출  
※ ④공사원가계산서는 투자완료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별첨1 「공사(제작)품의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 참조)

**별첨3****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선정항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b>■ 일반 항목</b>	<b>90점</b>	
① 휴게 취약직종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전화상담원(39912), 돌봄서비스 종사원(4211), 텔레 마케터(5313), 배달원(922),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41),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물경비원(94212)	20점	사업장 정보조회(공단 ERP)와 신청서류(사업 자등록증 등)를 통해 확인 <산재업종> (90101)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90104)기타의사업-시설 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종업종), (90102)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50105~50111)화물운수업.택배업.퀵서비스업, (90714)기타의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고용업종>(75991)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② 고열·한랭·다습작업장 <b>*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b>	20점	안전보건규칙 제559조의 고열작업 한랭작업 다습작업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인정 ※ 고열작업의 경우 작업환경측정고열 실시 여부로 확인 ※ 한랭다습작업의 경우 현장사진 공정설명서 등으로 판단하며 투자계획서 사설여부 확인
③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을 하는 사업장 <b>*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b>	15점	(야간작업) 산인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4호에 해당하는 작업(야간특검 실시여부로 확인)
④ 사업장의 영세성	10점	10인미만 10점, 10~20인미만 5점
⑤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병이 발생하였던 사업장	10점	최근 3년간(20~신청일) 산재승인된 사례에 한함
⑥ 고령근로자 수 - 만 55세 이상 근로자 수	최대 5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 고령근로자* 1명당 1점 부여
⑦ 신규 설치 대상 사업장	5점	별첨2 보조지원품목 중 휴게실 신규설치(사업장 건축물 내부공간 내 적정면적에 휴게실 신규설치)
⑧ 공단 보조사업 최초 지원 사업장	5점	
<b>■ 자율활동 우수항목</b>	<b>10점</b>	
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❶노사문화우수기업 ❷강소기업 ❸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❹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❺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기업 ❻일자리 으뜸기업 ❼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❽기업체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❾산학협력 우수기업 ❿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	최대 5점	각 1점씩 * 사업장에서 인증(포상) 등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⑩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 KOSHA-MS 인증,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기업	5점	(공생협력) '22~'23년 참여업체에 한함 (위험성평가인정) 공단에서 인정한 것으로 인정기한 내일 경우에 적용
계		
<p>※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b>공통적용 항목 순번(①→②→③→④→⑤→⑥→⑦→⑧)</b>으로 우선순위 적용 → <b>자율활동 우수항목(⑩→⑨)</b>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하고,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근로자수 적은 순으로 선정</p> <p>※ <b>증빙자료 미제출 시 미적용</b></p> <p>※ <b>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 및 자금결정 취소</b></p>		

## 별첨4

## 공사(제작)품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

### 1. 공사(제작) 원가(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보조금 지급요청 시)

- 보조금 신청 시 견적서(도면, 세부내역서 포함)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결정받고, 보조금 지급(투자완료확인)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sup>\*</sup>에서 작성한 공사(제작)원가(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보조금<sup>\*\*</sup> 확정

\* 원가계산용역기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를 충족 하는 업체: 등록증 또는 인증서 등으로 확인]

\*\* 견적서,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중 최저금액과 원가(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의 합을 보조지급 기준 가격(공단 판단금액)으로 산정(단, 최초 보조금 결정금액 초과 불가)

- 원가계산전문기관을 통한 원가(검토)보고서 작성비용(부가세 제외) 중 일부를 소요 금액으로 인정[단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 세금계산서(증빙자료) 등의 실 소요금액이 인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금액 인정

#### ■ 공사(제작) 소요금액별 원가(검토)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

공사금액 (소요금액)	4천만원 미만	4천~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원가(검토)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공단)	40만원	50만원	60만원

※ 예시) 근로자수 10인 사업장의 휴게실 공사금액 3,000만원인 경우

(총 소요금액) 3,000만원(공사금액) + 40만원(보고서 작성비용 최대 인정금액) = 3,040만원

(보조확정금액) 3,040만원(공단판단금액)×70%(보조비율) = 2,128만원

### 2. 공사(제작) 원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보조금 신청 시)

-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2021.12.1.)에 따라 작성한 공사(제작)원가계산서 적용

- 제출한 공사(제작)원가 계산서 금액의 80%<sup>\*</sup>를 보조지급 기준가격(공단 판단금액)으로 산정

\* 공단 연구용역 및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하여 산정한 공단 보조금 지급가격 산정기준

- 원가계산서 작성 비용 일부(부가세 제외)을 소요금액으로 인정[단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 세금계산서(증빙자료) 등의 실 소요금액이 인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금액 인정

#### ■ 공사(제작) 소요금액별 원가계산서 작성비용 인정금액

공사금액 (소요금액)	3천만원 미만	3천~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원가계산 작성비용 인정금액(공단)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예시) 근로자수 10인 사업장의 휴게실 공사금액 2,000만원인 경우

(총 소요금액) 2,000만원(공사금액) + 50만원(원가계산 비용 최대 인정금액) = 2,050만원

(공단 판단금액) 2,050만원×80%(가격산정기준) = 1,640만원

(보조확정금액) 1,640만원(공단판단금액)×70%(보조비율) = 1,148만원

## 별첨5 휴게시설 투자완료 점검 확인서

### 휴게시설 투자완료 점검 확인서

#### □ 휴게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연번	항목	문항	적합여부	
1	크기 적정성	· 최소면적 6m <sup>2</sup> 이상, 천장고 2.1m 이상 인가?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m <sup>2</sup>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6m <sup>2</sup> x공동 사업장수'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면적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공단에 제출한 투자계획서와 일치하는가?(보조금 신청시 작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2	설치위치 적정성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였는가?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m <sup>2</sup>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화재폭발위험장소/유해물질 취급장소/소음/분진을 저장·취급하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설치하였는가?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m <sup>2</sup>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3	안내표지 부착	· 휴게실 입구 또는 보기쉬운 장소에 근로자 휴게시설임을 인지할 수 있는 안내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4	냉난방 시설	· 냉·난방 및 습도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신청서 상의 모델과 동일한가?(보조금 신청시 작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온습도 확인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5	조명시설	· 공단에 제출한 투자계획서와 일치하는가?(보조금 신청시 작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조도를 100~200lux 수준으로 조절이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6	휴게비품·설비	· 신청서 상의 제품(쇼파, 의자, 테이블)과 동일한가?(보조금 신청시 작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7	담당자 지정	·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 건축법 등 관련법령 준수(휴게실 설치 시 작성)

연번	항목	문항	적합여부	
1	건축법 등 준수	· 건축법,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인허가 등)을 준수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하여 개선한 휴게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충족 등 위의 사실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사업주

(서명)